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637 발의연월일: 2023. 8. 3.

발 의 자:김영주·김정호·정필모

이원욱 • 홍정민 • 백혜련

강득구 · 강민정 · 이용빈

윤관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,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주최자가 없는 축제 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핼러윈데이에 특정 주최자가 없지만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경찰 등의 사전 안전관리 조치가 없 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.

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주 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때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(안 제66조의11제2항·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11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4항"으로, "수립절차"를 "수립절차와 제6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 및 요청"으로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파악, 인파 분산 및 이동통로 안내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

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. 이하 이조 및 제79조에서 같다)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)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의11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) ① (생 략) 전관리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 제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및 소방관 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 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고, 그 밖에 안전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 3 -----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 -----제1항 및 제2항-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를 지도 · 점검할 수 있으며, 점 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③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 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다.

<신 설>

<u>⑤</u> 제4항
,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 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거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를 하는 때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파악, 인파 분산 및 이동통로 안내 등을 위하여 위치정보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위치정보로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 태로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. 이 하 이 조 및 제79조에서 같다) 를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소 방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 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| 제6조제1항 ⑤ 제1항부터 <u>제4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<u>수립절차</u>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7. (생략)

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)에게
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
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
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u>⑦</u> <u>제5항</u>
수립절차와 제 <u>6항</u>
에 따른 위치정보의 활용 및
요청
제79조(벌칙)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
의11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
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
<u>자</u>
5. ~ 7. (현행과 같음)